

99년도 제1차 공동의회 순서

일시 : 1999년 1월 3일(주일) 찬양예배후

장소 : 본당

1부 경건회

사회 : 당회장 김성관 목사

찬 송 ----- 212장 ----- 다 같 이

성 경 ----- 엡 3: 2-7 ----- 사 회 자

말 씬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 김성관 목사
일군으로 충성하자

기 도 ----- 전홍렬 장로

2부 회무처리

회 원 점 명 ----- 서 기

개 회 선 언 ----- 회 장

98년도감사보고 ----- 감사위원장

98년도결산보고 ----- 재정위원장

99년도예산안건 ----- 다 같 이
(재정위원장)

교회회칙 통과 ----- 당회서기

광 고 ----- 위 원

폐 회 ----- 다 같 이

99년도 제1차 공동의회의록

일시 : 1999년 1월 3일(주일) 찬양예배후

장소 : 본당

당회장 김성관목사의 진행으로 찬송 212장을 부른 후 성경 에베소서 3장2절에서 7절을 봉독한 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으로 충성하자”라는 말씀을 전한 후 전홍렬장로의 기도로 1부 경건회를 마친다.

2부 회무처리를 위하여 서기가 회원점명을 하니 690명이 참석하여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회순에 따라 교회회칙 개정에 대한 당회 부서기의 요약 보고를 들은 후 통과 가부를 물어 가결하다.

이어서 98년도 말로 은퇴한 강순용, 김방진장로의 원로장로 추대안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추대하기로 가결하고 추대패를 증정하다.

이어서 감사위원장의 98년도 회계 감사보고를 듣고 받기로 가결한 후 재정 위원장이 98년도 재정 결산보고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니 의장이 결과보고 예산안에 대하여 가부를 물으니 원안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 동의와 제청이 있어 가결한 후 찬송212장을 부른후 김방진 원로장로의 기도로 폐회하니 오후 6시40분이 되다.

첨부 : 1.교회회칙 개정보고서
2.98년도 감사보고서
3.98년도 결산보고 및 99년도 예산안

공동의회 의장 김 성 관 목사

서기 노 광 현 장로

기록 윤 성 철 장로



충현교회 회칙 개정 보고

1. 1998년 6월 정기당회의 의결로 충현교회의 제반 규정을 재 정비하기로 하고 규정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7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제 규정의 개정과 구조 조정안 수립에 대한 임무를 위촉하다.

2. 규정개정 소위원회는 우선 총회 헌법을 근거로 하여 각 분야별 규정을 통폐합하여 충현교회 회칙을 개정하고 회칙에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하여 교회운영규정, 각 시행세칙을 제정키로 하다.

3. 교회 제 규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다.

1) 회칙 : 본 교회 운영의 기본법칙이며 모든 규정에 우선하는 법으로서 총회 헌법을 근거로 하되 본 교회의 특성상 특정 부분은 채택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회칙의 개정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금번 개정은 당회의 결의로 시행하되 차기 공동의회에 상정키로 함.

2) 운영규정 : 회칙에 규정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함.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당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시행세칙에 우선하는 규정임.

3) 시행세칙 : 운영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교회 산하 각기관 및 부서의 자체 시행방법,절차,요령 등을 규정하며 지금까지의 각 종 관리규정, 지침서 등이 포함됨.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해당 기관,부서에서 발의하여 당회의 승인 사항으로 함.

4. 회칙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5대 목표를 실천하는 것을 본 교회의 목적으로 회칙에 명기함.(제2조)

* 5대 목표중 “지역사회 봉사”는 성경적 의미의 “이웃사랑”으로 표기하기로 하였음.

2) 교인의 의무를 명문화하였음(제7조)

3) 신고없이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되고 직원인 경우 시무가 중지됨.(제8조)

4) 교회 직원의 개념을 헌법에 근거하여 향존직(목사,장로,집사),임시직(전도사,권사,서리집사) 및 준직원(목사후보생,강도사)으로 구분하였으며(제12조) 통상 칭하는 교회 상근직원은 당회 기관의 상근행정부서에 속하는 것으로 (제26조 4항) 하였음.

5) 무임장로와 협동장로에 대한 규정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임장로에 대하여만 총회회칙을 채택하되 무임장로로 자격을 부여하는 추천과 심의 결의를 당회의 결의 사항으로 함.(제12조 1항 2)의6, 제13조 7항)

6) 교회 직원의 정년은 만 70세로 통일하였으나 임시 직원의 경우(전도사,권사,서리집사) 특정직, 특히 전도사의 경우 현행 제도(만65세)를 수용할 수 있게 예외 문구를 둠(제12조2항)

7) 교회직원의 선거규정을 명문화하고 당회의 추천권과 투표방법 등을 운영규정과 당회결의사항으로 규정함.(제13조)

* 본 교회의 경험적 특성상 총회헌법의 규정대로 선거하기 어려운 부분은 부가조항을 추가하였음("예" : 시무권사의 선출방법)(제13조 11항)

8) 목사의 안식년 제도를 규정하고 시행에 관하여 운영규정에 정하기로 함.(제16조)

9) 직원의 휴직과 복직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함.(제 15조 - 17조)

* 자원 휴직자에 대하여는 복직청원 시 당회결의 사항으로 함.

* 권고 휴직자가 복직청원 시에는 휴직 원인이 해소되고 당회에서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함. 단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 공동의회의 피선을 요 함.

10) 당회의 유관 기관으로 위원회,법인재단,실무부서,상근행정부서,자치회 설치에 대하여 명문화함.(제26조)

11) 교회의 인사권은 교회 운영규정에 명시하도록 함(제27조) 단, 목사의 청빙, 장로,집사,권사의 피택에 대하여는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임.

12) 총회헌법에 있는 장로시무 투표를 3년에 1차씩 공동의회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본 회칙에도 포함 함.(제13조-6항)

13)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 명문화 함.(제8장과 제9장)

14) 각종 회의 시 의사결의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명문화 함.(제37조)

15) 각종 당회에 상정된 결의 안건의 효력은 당회의 의결통과 즉시 효력을 가짐(제41조)

16) 교회의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규정하고 선거운동 금지를 명문화 함.(제38조)

17) 교회의 치리권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회헌법의 권징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명문화함.(제42조)

18) 교회의 재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은 재단법인에 편입보존하되 운영권은 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당회가 재단의 운영을 관장할 수 있도록 장치 함.(제12장)

19) 경과규정으로 본 회칙 개정은 당회 통과 후 즉시 시행하고 연말 공동회회의 통과를조건으로 하며 본 회칙에 관련되는 각종 규정은 통폐합하여 99년 1월말 까지 교회운영규정과 시행세칙으로 제정하도록 명문화 함(부칙제1조) 끝.

규정개정 소위원회

위원장 김 차 생 장로

위 원 윤 명 식 장로

정 하 우 장로

서 동 석 장로

하 대 선 장로

박 승 준 장로

윤 성 -철 장로

2. 충현교회 회칙 개정안

(1998.10.)

충현교회 규정개정 소위원회



1918年 12月 10日

（附）

（附）

충현교회 회칙 개정안 수립경과 보고

1. 1998년 6월 정기당회의 의결로 충현교회의 제반 규정을 재 정비하기로 하고 규정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7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제 규정의 개정과 구조 조정안 수립에 대한 임무를 위촉하다.

2. 규정개정 소위원회는 우선 총회 헌법을 근거로 하여 각 분야별 규정을 통폐합하여 충현교회 회칙을 개정하고 회칙에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하여 교회운영규정, 각 시행세칙을 제정키로 하다.

3. 교회 제 규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다.

1) 회칙 : 본 교회 운영의 기본법칙이며 모든 규정에 우선하는 법으로서 총회 헌법을 근거로 하되 본 교회의 특성상 특정 부분은 채택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회칙의 개정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금번 개정은 당회의 결의로 시행하되 차기 공동의회에 상정키로 함.

2) 운영규정 : 회칙에 규정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함.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당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시행세칙에 우선하는 규정임.

3) 시행세칙 : 운영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교회 산하 각기관 및 부서의 자체 시행방법,절차,요령 등을 규정하며 지금까지의 각 종 관리규정, 지침서 등이 포함됨.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해당 기관,부서에서 발의하여 당회의 승인 사항으로 함.

4. 회칙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5대 목표를 실천하는 것을 본 교회의 목적으로 회칙에 명기함.(제2조)

* 5대 목표중 "지역사회 봉사"는 성경적 의미의 "이웃사랑"으로 표기하기로 하였음.

2) 교인의 의무를 명문화하였음(제7조)

3) 신고없이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되고 직원인 경우 시무가 중지됨.(제8조)

4) 교회 직원의 개념을 헌법에 근거하여 향존직(목사,장로,집사),임시직(전도사,권사,서리집사) 및 준직원(목사후보생,강도사)으로 구분하였으며(제12조) 통상 칭하는 교회 상근직원은 당회 기관의 상근행정부서에 속하는 것으로 (제26조 4항) 하였음.

5) 무임장로와 협동장로에 대한 규정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임장로에 대하여만 총회 회칙을 채택하되 무임장로로 자격을 부여하는 추천과 심의 결의를 당회의 결의 사항으로 함.(제12조 1항 2)의6, 제13조 7항)

6) 교회 직원의 정년은 만 70세로 통일하였으나 임시 직원의 경우(전도사,권사,서리집사) 특정직,, 특히 전도사의 경우 현행제도(만65세)를 수용할 수 있게 예외 문구를 둠(제12조2항)

7) 교회직원의 선거규정을 명문화하고 당회의 추천권과 투표방법 등을 운영규정과 당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함.(제13조)

* 본 교회의 경험적 특성상 총회헌법의 규정대로 선거하기 어려운 부분은 부가 조항을 추가하였음("예" : 시무권사의 선거)(제13조 11항)

8) 목사의 안식년 제도를 규정하고 시행에 관하여 운영규정에 정하기로 함.(제16조)

9) 직원의 휴직과 복직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함.(제 15조 - 17조)

* 자원 휴직자에 대하여는 복직청원 시 당회결의 사항으로 함.

* 권고 휴직자가 복직청원 시에는 휴직 원인이 해소되고 당회에서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함. 단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 공동의회의 피선을 요 함.

10) 당회의 유관 기관으로 위원회,법인재단,실무부서,상근행정부서,자치회 설치에 대하여 명문화 함.(제26조)

11) 교회의 모든 인사권은 당회가 가짐을 명문화 함(제27조) 단, 목사의 청빙, 장로,집사,권사의 피택에 대하여는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임.

12) 총회헌법에 있는 장로시무 투표를 3년에 1차씩 공동의회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본 회칙에도 포함 함.(제13조 6항)

13)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 명문화 함.(제8장과 제9장)

14) 각종 회의 시 의사결의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명문화 함.(제37조)

15) 각종 당회에 상정된 결의 안건의 효력은 당회의 의결통과 즉시 효력을 가짐(제41조)

16) 교회의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규정하고 선거운동 금지를 명문화 함.(제38조)

17) 교회의 치리권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회헌법의 권징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명문화함.(제42조)

18) 교회의 재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은 재단법인에 편입보존하되 운영권은 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당회가 재단의 운영을 관장할 수 있도록 장치 함.(제12장)

19) 경과규정으로 본 회칙 개정은 당회 통과 후 즉시 시행하고 연말 공동회회의 통과를 조건으로 하며 본 회칙에 관련되는 각종 규정은 통폐합하여 99년 1월말 까지 교회운영규정과 시행세칙으로 제정하도록 명문화 함(부칙제1조) 끝.

규정개정 소위원회

위원장 김 차 생 장로

위 원 윤 명 식 장로

정 하 우 장로

서 동 석 장로

하 대 선 장로

박 승 준 장로

윤 성 철 장로

충현교회 회칙 (개정안) 조항 순서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 제 2 조 (목적)
- 제 3 조 (소속)
- 제 4 조 (위치)
- 제 5 조 (근거)

제 2 장 회 원

- 제 6 조 (회원)
- 제 7 조 (교인의 의무)
 - 1.교회 출석의 의무:
 - 2.교회의 사업에 협력할 의무:
 - 3.성경공부와 실천의 의무:
 - 4.진리의 수호와 준법의 의무:
 - 5.거룩한 생활의 의무:
- 제 8 조 (교인의 권리)
 - 1.선거권과 피선거권:
 - 2.성찬에 참여권:
 - 3.교회에 봉사권:
 - 4.청원권과 상고권:
- 제 9 조 (교인의 퇴회)
- 제 10 조 (교인의 이명)

제 3 장 교회의 직원

- 제 11 조 (교회 직원)
 - 1.교회 직원의 정의와 자격 :
 - 2.교회 직원의 의무 :
- 제 12 조 (교회 직원의 구분)
 - 1.항존직원:
 - 2.임시직원 :
 - 3.준 직원 :

제 4 장 교회 직원의 선거

- 제 13 조 (교회직원의 선거)
 - 1.위임목사 또는 임시 목사의 청빙 :
 - 2.부목사 :

- 3.원로목사 :
- 4.선교목사 :
- 5.협동목사 :
- 6.장로 :
- 7.무임장로 :
- 8.집사 :
- 9.시무전도사 :
- 10.원로전도사 :
- 11.시무권사 :
- 12.목사후보생 및 강도사 :

제 5 장 교회 직원의 사임/사직/휴직/복직

제 14 조 (교회직원의 사임/사직)

- 1.자원사임/사직 :
- 2.권고사임 :
- 3.권고사직 :

제 15 조 (교회직원의 휴직)

- 1.자유휴직 :
- 2.권고휴직 :

제 16 조(목사의 휴양과 휴무)

제 17 조(교회 직원의 복직)

- 1.휴직된 자의 복직 :
- 2.사임된 자의 복직 :
- 3.사직된 자의 복직 :

제 6 장 예배와 성례

제 18 조 (예배와 성례)

제 19 조 (예배)

제 20 조 (성례)

- 1.세례 :
- 2.성찬 :

제 7 장 당 회

제 21 조 (당회조직)

제 22 조 (조직)

- 1. 당회장 :
- 2. 당회 임시 의장 :
- 4. 당회서기 :
- 5. 당회부서기 :

제 23 조 (회집)

제 24 조 (당회록)

제 25 조 (교회문부의 보관)

1. 일반문부 :

2. 교인명부록 :

제 26 조 (기관)

1. 위원회 :

2. 법인재단 :

3. 실무부서 :

4. 상근행정부서 :

5. 자치회 :

제 27 조 (인사권)

제 8 장 공 동 의 회

제 28 조 (공동의회 조직)

제 29 조 (직무와 권한)

제 30 조 (회의 소집)

제 31 조 (의결)

제 32 조 (회의록)

제 9 장 제 직 회

제 33 조 (구성과 조직)

제 34 조 (회의 성수)

제 35 조 (소집)

제 36 조 (직무와 권한)

제 10 장 교회의 의사규정

제 37 조 (의사결의)

제 38 조 (교회의 선거와 투표)

1. 선거운동의 금지 :

2. 유효표와 무효표 :

3. 계수의 방법 :

제 39 조 (회장과 그 임무 및 권한)

1. 회장의 임무 :

2. 회장의 가부결의권 :

3. 회장의 비상정회권 :

제 40 조 (서기와 그 임무)

1. 서기의 권한 :

제 41 조 (효력)

제 11 장 권징

제 42 조 (치리권)

제 12 장 재정과 재산관리

제 43 조 (교회 재산의 조성)

제 44 조 (교회 재산의 보존)

제 45 조 (교회재산의 귀속과 사용)

제 46 조 (회계년도)

제 13 장 회칙개정

제 47조 (회칙의 개정)

제 14 장 부 칙

제 1 조 (경과규정)

제 2 조 (기타사항)

제 3 조 (효력발생)

제정 / 1989년 11월 9일

개정 / 1991년 1월 31일

개정 / 1992년 10월 28일

개정 / 1998년 10월

총현교회 회칙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 라 부른다.

제 2 조 (목적) 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구약 성경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법칙임을 고백하고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이웃사랑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하며 지역 노회는 동서울 노회로 한다.

제 4 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번지에 위치한다.

제 5 조 (근거) 본 교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근거로하여 회칙을 정하고 본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사항이나 위임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교회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을 둔다. 본 회칙은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며 교회운영규정과 각 시행세칙은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승인하고 본 교회 회칙을 순용하는 자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고백하고 본 교회에 등록된 자를 회원(이하 교인이라 함)이라 한다.

제 7 조 (교인의 의무) 본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이 된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1.교회 출석의 의무: 교인은 교회의 각종 예배와 기도회와 기타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2.교회의 사업에 협력할 의무: 교인은 교회의 유지와 사업(자선과 전도등)에 노력과 물질로 협력하여야 한다.
- 3.성경공부와 실천의 의무: 교인은 성경을 힘써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고, 그 것을 전파해야 한다.
- 4.진리의 수호와 준법의 의무: 교인은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법을 준수하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 5.거룩한 생활의 의무: 교인은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특히 교회의 직원으로 ① 성일을 범하거나 ② 미신 행위나 ③ 음주, 흡연 ④ 구타 등을 하거나 ⑤ 고의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그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다.

제 8 조 (교인의 권리) 본 교회 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다만, 교회의 권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제한 받을 수 있다.

1.선거권과 피선거권: 본 교회 임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단, 신고없이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의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되며 그에 준한 직원은 그의 시무가 중지된다. 단, 그의 복직은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성찬에 참례권: 수찬 정지를 받지 않은 회원은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3.교회에 봉사권: 회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4.청원권과 상고권: 회원은 교회의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소원,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단, 본 교회 내에서의 청원 사항은 본 회칙의 적용을 우선한다.

제 9 조 (교인의 퇴회) 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회한 것으로 한다.

1.교인으로 등록하여 회원이 된 후 타 교회로 이명하거나 무고히 6개월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정될 시.

2.교회의 권징에 의하여 출교당한 자.

3.교인의 퇴회에 관한 것은 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교인의 이명) 교인이 타 노회나 타 교회로 이적을 하는 경우 이명이라하며 이명서를 교부받으면 본 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시무권이 즉시 상실되고 해제된다. 교인의 이명에 관한 것은 교회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교회의 직원

제 11 조 (교회 직원)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근거로 하여 교회의 직원을 세운다.

1.교회 직원의 정의와 자격 : 교회의 직원은 교인들의 선거에 의하거나 당회의 임명을 받고 교회에 봉사하는 자이다. 다만, 교인은 교적이 있는 소속 교회에서만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타 교회에서 전입해온 교인은 이명서가 접수되기 전에 본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

2.교회 직원의 의무 : 교회의 직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땅히 모든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교인의 의무를 실행함에 있어서도 더욱 그러하다. 만일 교회의 직원으로서 교인의 의무마저도 실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직임을 해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 12 조 (교회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원, 임시직원 및 준 직원으로 구분한다.

1.항존직원: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할 직원을 말한다. 교회의 항존직으로는 목사,장로 및 집사로 구분하며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70세가 되는 년말로 한다.

1).목 사 : 교회에서 강론과 치리를 맡은 장로이다. 목사는 그 시무의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칭호로 구별된다.

① 위임목사 :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청빙이 허락되어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하며 본 교회를 대표하고 당회의 회장이 되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시무한다.

② 임시목사 : 교회의 청빙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이며 그 시무기간은 2년 이다.

③ 부목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며 그의 임기는 1년이다.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빙 청원하되 계속 시무케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④ 선교목사 :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거나 부목사 중에서 선임되어 노회의 허락을 받아 문화권이 다른 국민에게 복음사역을 담당하는 목사이다.

⑤ 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만년에 시무를 사면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는 당회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의 과반수의 가결을 받고 사례(봉급)를 작정한후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원로목사로 추대한다. 만70세 이하로 다시 시무하면 원로목사에서 해제된다.

⑥ 은퇴목사 : 본 교회에서 정년 퇴임한 목사로서 당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⑦ 협동목사 : 본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당회의 가결로 청빙하여 당회에서 위임된 특정분야에 협력하는 목사이다.

2). 장 로 :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의 치리를 맡은 장로이다. 장로는 회칙 제 13조 6항에 따라 소정의 임직과정을 마친자로하며 종신직이나 시무의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칭호로 구분한다.

① 시무장로 : 본 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하여 치리권을 가진 장로를 말한다.

② 공로장로 : 본 교회에서 25년이상 시무한 후 은퇴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찬성으로 공로장로로 추대된 장로를 말하며 당회와 제직회의 연권회원이 된다.

③ 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후 은퇴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 장로를 말하며 당회와 제직회의 연권회원이 된다.

④ 은퇴장로 : 본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만 70세 정년으로 은퇴하는 장로로서 당회의 결의로 은퇴장로로 추대한 장로이다. 당회의 허락으로 제직회의 연권회원이 될 수 있다.

⑤ 휴직장로 : 장로가 본 회칙 제15조에 의하여 휴직하였을 경우에는 휴직장로가 된다.

⑥ 무임장로 : 타 교회에서 이명와서 아직 시무권이 없는 장로이다. 본 교회의 무임장로로서의 자격은 당회의 심의 가결에 의한다.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당회의 연권회원 자격과 특정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당회의 가결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집 사 : 집사는 통상 안수집사로 칭하며 교회에서 봉사권을 가지고 교회물섬기는 일꾼이다. 집사는 회칙 제13조 8항에 따라 소정의 임직과정을 마친 항존직이며 그 시무의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호칭으로 구분한다.

①시무집사 : 본 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을 받아 시무하고 있는 집사를 말한다.

②휴직집사 : 시무집사가 본 회칙 제 15조에 의하여 휴직하였을 때에는 휴직집사로 된다.

③은퇴집사 : 본 교회에서 시무집사로 시무하다가 만70세가 되어 은퇴한 집사이다. 당회의 결의로써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④무임집사 : 타 교회에서 이명와서 아직 시무권이 없는 집사이다. 무임집사는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없이 시무집사로 된다.

2. 임시직원 :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안수없이 임시로 선임하는 직원을 말한다. 교회의 임시직으로는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분하며 임시직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단, 특정직에 대하여 당회가 별도로 정년을 정할 수 있다.

1). 전도사 : 당회의 추천을 받아 노회의 고시에 합격한 자 또는 이미 그 자격을 인가 받은 자로서 본 교회의 유급 교역자로 선임된 자를 말하며 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전도사는 그 시무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호칭으로 구분한다.

①시무전도사 : 본 교회에서 시무중인 전도사이다.

②원로전도사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후 정년에 은퇴한 전도사로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원로전도사로 추대된 전도사이다.

③은퇴전도사 : 본 교회에서 20년 미만 시무한 후 정년에 은퇴한 전도사이다.

2). 권사 : 당회의 지도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직분이다. 권사는 총회헌법에 따라 본래 교회의 안수없는 종신직으로서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다. 그 시무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호칭으로 구분한다.

①시무권사 : 권사로 임직을 받아 현재 시무 중인 자이다.

②원로권사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후 정년에 은퇴한 권사로 당회의 결의로 원로 권사로 추대된 권사이며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③은퇴권사 : 본 교회에서 20년 미만 시무한 후 정년에 은퇴한 권사이며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3). 서리집사 : 집사의 직무를 대신하는 자로서 신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당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1년이다. 그 직무도 집사에 준하며 당회의 감독아래 교회에 봉사하되 특히 환난 당한 교인의 위문과 구제에 힘쓴다.

4).은퇴 서리집사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시무하다가 은퇴한 자이다. 당회의 결의로써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3. 준 직원 : 교회는 필요에 따라 준 직원으로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를 선임할 수있다.

1).목사 후보생 : 목사직을 희망하여 신학을 수학하는 자로서 본 교회에서는 당회 가결에 의하여 특정한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2).강도사 : 총회의 고시에 합격하여 노회로부터 강론할 자격을 받은 자로서 본 교회에서는 당회의 가결에 의하여 특정한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 장 교회 직원의 선거

제 13 조 (교회직원의 선거) 직원을 선거하는 권한은 본 교회에 있으며 항존직과 임시직 및 준직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한다.

1.위임목사 또는 임시 목사의 청빙 :

1).투표하기 전 :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당회장이 예배를 인도한 후에 공포하기를 "은 교회가 ○○○목사를 위임(또는 임시)목사로 청빙하기위하여 투표할 것입니다."라고 한 후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

2).투표한 후 : 투표결과 투표수 3분의2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을 선포하고 청빙서에는 무효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하도록 한다. 단 소수라도 심히 반대하면 회장은 화해를 중용하고 그 내용을 공동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한다.

3).본 교회에의 위임목사 또는 임시목사 청빙 투표를 위하여서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청빙후보가 되며 당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선거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2.부목사 :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목사의 청빙을 위한 당회의 결의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당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원로목사 : 원로목사 추천을 위한 당회의 가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선교목사 : 선교목사 추천을 위한 당회의 가결은 과반수로 한다.

5.협동목사 : 협동목사 청빙을 위한 당회의 가결은 과반수로 한다. 협동목사는 본 교회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선임할 수 있다.

6.장로 : 장로의 선거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헌법 제5장 제3조(장로의 자격)의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공동의회에서 후보 추천에 대한 위임을 받은 당회가 추천을 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자가 피택되며 소정의 교육과 노회의 고시에 합격한 자를 임직 절차를 거쳐 시무를 하게 한다. 장로의 시무투표를 3년에 1차씩 공동의회에서 할 수 있고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장로의 당회추천 및 공동의회에서의 투표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7.무임장로 : 본 교회 무임장로로서의 자격부여와 당회 언권회원 자격을 위한 당회결의는 당회원출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무임장로 자격 부여와 당회 언권회원 자격에 대한 추천 및 심사에 관하여는 교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8.집사 : 집사의 선거는 총회헌법 제6장 제2조(집사의 자격)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피택되며 소정의 교육 절차를 거쳐 고시에 합격한 자를 임직 시무케한다. 집사의 당회 추천과 공동의회의 투표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교회운영규정에 의한다.

9.시무전도사 : 교회의 유급 전도사로 청빙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청빙한다.

10.원로전도사 : 원로전도사는 당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대한다.

11.시무권사 : 권사의 선거는 총회헌법 제3장 제3조(권사의 자격)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피택되며 소정의 교육 절차를 거쳐 고시에 합격한 자를 임직 시무케한다. 다만, 3분의2이상 득표자가 계획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중다수"로 당회의 결의에 의해 소정의 인원을 선출할 수 있다. 권사의 당회 추천과 공동의회의 투표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12.목사후보생 및 강도사 : 당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한다.

제 5 장 교회 직원의 사임/사직/휴직/복직

제 14 조 (교회직원의 사임/사직) 교회 직원의 사임은 자원사임, 권고사임으로 구분하며 사직은 자원사직과 권고 사직으로 구분한다.

1.자원사임/사직 : 자원사임 또는 사직은 아래와 같다.

1).목사가 교회의 시무를 원치아니하여 노회에 시무 사임을 청원하여 결정되면 자원 사임으로 한다.

2).목사가 자기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노회에서 결정되면 자원 사직으로 한다.

3).장로나 집사 또는 권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임또는 사직을 원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사임 또는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 당회의 결의 "에 대하여는 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권고사임 : 권고 사임은 아래와 같다.

1).교회가 목사의 위임을 해약하고자 할 때는 권고사임으로 한다. 권고사임시에는 공동의회 투표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노회에 청원한다. 단, 본인이 소원을 제기하면 상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위임은 해제하지 못한다.

2).장로 또는 집사가 이단이나 큰 악행은 없을 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교회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한 때 당회는 그를 권고한 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임케 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3).권사가 이단이나 큰 악행은 없을 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된 경우에는 당회는 그를 권고한 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임케 할 수 있다.단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3.권고사직 : 권고 사직은 아래와 같다.

1).장로 또는 집사가 이단이나 큰 악행은 없을 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때 당회는 그를 권고한 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2).권사가 이단이나 큰 악행은 없을 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된 경우에는 당회는 그를 권고한 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단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4.위의 1항 내지 3항에 규정한 이외의 직분자의 사임 또는 사직에 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5 조 (교회직원의 휴직) 교회 직원의 휴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1.자유휴직 : 장로, 집사 또는 권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휴직하고자 하면 본인의 청원과 당회의 결의로 휴직할 수 있다.

2.권고휴직 : 장로나 집사 또는 권사가 범죄는 없을 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 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당회는 그를 권고한 후 당회의 결의로 휴직케 할 수 있다.단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3.위의 1항과2항에 규정한 이외의 직분자의 휴직에 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6 조(목사의 휴양과 휴무) 목사가 안식년이 되거나 건강상의 이유,또는 신학 연구,기타의 사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휴양 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그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노회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1년이 경과시에는 자동적으로 본교회의 담임에서 해제된다. 단,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식년 시행에 관하여는 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7 조(교회 직원의 복직) 교회직원의 복직은 아래와 같이 행한다.

1.휴직된 자의 복직 : 휴직된 자의 복직은 자원 휴직한 자와 권고 휴직된 자의 경우를 구분한다.

1).자원 휴직한 장로나 집사 또는 권사가 복직을 청원할 시에는 당회의 결의로서 복직된다.

2).권고 휴직된 장로나 집사 또는 권사가 복직을 청원할 시에는 그 휴직 원인이 해소되어 당회에서 투표수 3분의2의 찬성으로 복직된다. 단, 휴직 기간이 만 1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피선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2.사임된 자의 복직 : 사임된 장로나 집사가 복직을 청원시에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2의 찬성으로 복직된다.

3.사직된 자의 복직 : 1)사직된 장로가 복직을 청원시에는 그 사직의 원인이 해소되고 당회에서 3분의2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임직식을 하여야 복직된다. 단 노회의 장로 증원 허락과 공동의회의 피선으로 시무장로가 될 수 있다.

2)사직된 집사가 복직을 청원시에는 그 사직의 원인이 해소되고 당회에서 3분의2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다시 임직식을 하여야 복직된다. 단 공동의회에서 피선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4.위의 1항내지 3항에 규정한 이외의 직분자의 복직에 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예배와 성례

제 18 조 (예배와 성례) 본 교회는 예배와 성례를 가장 귀중하게 시행하고 교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교회에 드리는 예배와 성례는 총회 헌법이 규정하는 예배 모범을 따르며 예배와 성례,집회에 대한 사항은 예배위원회에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 19 조 (예배)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①.주일 낮예배
- ②.주일 저녁(오후)예배
- ③.수요일 예배
- ④.새벽 예배
- ⑤.구역 예배
- ⑥.가정 예배
- ⑦.기타 예배

제 20 조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구분한다.

1.세례 :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치는 예식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유아세례 : 젖먹이의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 아이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게 한다.

2).입교(세례) : 입교는 예수교의 공동체에 정식으로 가입되는 것을 뜻하며 입교하면 교회의 정교회원이 되며 교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①유아세례를 받은 자 : 만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당회가 시행하는 입교고사에 합격하면 공회앞에서 입교서약을 하고 입교한다.

②학습을 받은 자 : 유아세례를 받지않은 자가 입교하려면 학습을 받아야 한다. 학습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만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당회가 시행하는 입교고사에 합격하면 공회앞에서 입교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아 입교한다.

3).개종 : 성삼위의 이름으로 영세를 받은 자가 개종을 원하여 신앙고백을 하고 공회앞에서 입교서약을 하면 교회의 정교회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성찬 : 떡과 포도즙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거기에 참여하는 예식이다.

3.세례와 성찬 예식에 대한 회수,일정,장소등에 대하여는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당 회

제 21 조 (당회조직) 본 교회의 치리권은 당회에 있으며 당회는 당회장인 목사와 회원인 치리장으로 구성하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
- 2).교인의 인사관리 주관
- 3).예배와 성례의 거행
- 4).교회직원의 임명, 추천 및 취임과 임직 관장
- 5).헌금수집의 주관과 분배의 감독
- 6).기관과 속회의 지도 감독
- 7).권징과 해별
- 8).상회와의 관계
- 9).교회에 속한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장리
- 10).각 종 법인에 관한 사항 관장

제 22 조 (조직) 당회는 교회의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당회를 조직 운영한다.

1. 당회장 : 당회장은 위임목사가 된다.
2. 당회 임시 의장 : 당회장 유고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서기가 대행하되 재판 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4. 당회서기 :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당회장을 보좌하고 당회 의안을 수렴하여 당회에 상정한다.
5. 당회부서기 :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가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고 각종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제 23 조 (회집) 1년 1회 이상 정기회를 소집하며, 임시회는 본 교회 목사(당회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상회가 명할 때, 당회원 반수 이상이 청원할 때 소집하며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가 된다.

제 24 조 (당회록) 당회록은 서기가 기록하며 당회의 회집의 일시와 장소, 출석회원과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교회에 보관하고 노회가 요구할 시 검사를 받는다.

제 25 조 (교회문부의 보관) 당회는 교회에 관련된 아래의 문부를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부 :

- 1). 교적부
- 2). 당회 회의록(재판회의록 포함)
- 3). 공동의회 회의록(공동의회 보고서 포함)
- 4). 제직회 회의록
- 5). 각기관과 속회 회의록
- 6). 본 교회 연혁
- 7). 교회의 부동산 및 물품대장
- 8). 각종 통계표
- 9). 각종 보고철과 참고서류철
- 10). 상회(노회와 총회)의 회의록

2. 교인명부록 :

- 1). 원입교인 명부(등록일 기입)
- 2). 학습교인 명부(학습일 기입)
- 3). 유아세례교인 명부(세례일과 부모의 이름 기입)
- 4). 입교인 명부(입교일 기입)
- 5). 시별 및 해별교인 명부(해당일 기입)
- 6). 이명서교부 교인 명부(해당일 기입)
- 7). 이명접수 교인 명부(해당일 기입)
- 8). 별 명부 (1년이상 실종된 교인, 해당일 기입)
- 9). 소천교인 명부(소천일 기입)
- 10). 결혼교인 명부(결혼일 기입)

제 26 조 (기관) 당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와 기관을 두며 해당 위원회와 기관내에 실무부서를 둘수 있고 세부사항은 교회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위원회 : 회칙 제2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당회에서 위임받은 집행기관으로서 위임된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여 시행하거나 산하 부서를 지도한다.

1) 위원회의 종류와 임무 및 규모는 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2) 각 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위원장, 지도 교역자, 서기(부서기), 회계를 둔다.

2. 법인재단 : 회칙 제 21조 9호 내지 10호의 직무를 위하여 아래의 법인을 설립하며 각 법인마다 정관을 두고 당회의 결의와 관제 관청의 승인하에 운영하되 재단 이사의 선임은 당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재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회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재단의 종류 : ① 재단법인 총현교회 유지재단
 ② 사회복지법인 총현복지재단
 ③ 재단법인 총현동산

3. 실무부서 : 각 위원회와 법인재단 내에 당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집행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부.실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교회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상근행정부서 : 교회 각 기관의 실무집행을 위하여 상근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두며 세부사항은 교회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자치회 : 본 교회에서는 당회가 인정하는 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부서장이 관할한다. 자치회에 관한 운영규정은 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27 조 (인사권) ~~목회와 모든 인사권을 당회가 가진다.~~ 목사의 청빙, 장로, 집사 및 권사의 피택에 대하여는 공동의회의 의결에 의한다. 원활한 인사를 위하여 본 회칙에 명시한 이외의 사항은 교회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8 장 공 동 의 회

제 28 조 (공동의회 조직) 본 교회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모두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으로는 의장과서기 각 1명씩을 둔다
2.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서기가 된다.
3. 당회장이 유고시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노회에 임시 회장을 청한다.

제 29 조 (직무와 권한) 공동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회의 경과 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교회 각 기관의 보고와 교회 예산 수지결산과 신 사업 예산서를 채택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2. 위임목사 청빙, 장로와 집사 선거, 권사 선거, 재판 등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
3. 교회당의 건축과 부동산의 매입 매각에 대한 안건을 의결한다.

제 30 조 (회의 소집) 공동의회 회의 소집과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필요로 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2. 당회는 개회할 날자,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성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할 수도 있다.
3. 회의는 매년말에 회집하는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 회집하는 임시회로 모인다.

제 31 조 (의결) 공동의회의 의결은 일반안건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투표와 장로, 집사 선거는 투표수중 3분의 2 이상의 "가" 표를 얻어야 하며 권사 선거는 투표수중 3분의 2 이상의 "가" 표를 원칙으로 하나 당회의 결의에 의해 종다수로 소정의 인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 32 조 (회의록) 공동의회의 결정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 과 서기가 기명 날인한 후 이를 교회에 보관한다.

제 9 장 제 직 회

제 33 조 (구성과 조직) 본 교회 재정관계 심의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운영한다.

1.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구성하나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무교역자, 권사 및 서리집사 및 언권회원을 포함한다.

2. 제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와 회계 각 1명씩을 두고 부서기와 부회계 약간 명을 둔다.

3. 제직회의 직무와 권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교회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34 조 (회의 성수) 제직회의 성수는 다음과 같다.

제직회 성수는 재직회원의 과반수이나 인원이 미달시는 통상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출석회원만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집된 회원이 너무 적으면 회장이 연기할 수 있다.

제 35 조 (소집)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이상 당회에서 결정하여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36 조 (직무와 권한) 제직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의 처리.
2. 구제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본회에서 관장하되 회계를 통하여 처리한다.
3. 제직회는 공동의회에 1년간의 회계 결산, 다음 해의 교회예산, 기타 보고를 해야한다.
4. 회계는 금전출납사항을 정기적으로 감사받고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장 교회의 의사규정

제 37 조 (의사결의) 본 교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결의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38 조 (교회의 선거와 투표) 본 교회에서 시행하는 선거와 투표는 총회의 헌법적 규칙 제7조에 근거한다.

1. 선거운동의 금지 :

- 1). 교회적인 선거는 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해야 한다.
- 2).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2. 유효표와 무효표 :

- 3). 연기명 투표에 있어서 정원수 이하를 기록한 것은 유효로 하고 정원수를 초과한 것은 무효로 한다.

3. 계수의 방법 : 무효표는 총 투표수에 계산하고 백표는 총 투표수에 계산하지 않는다.

제 39 조 (회장과 그 임무 및 권한) 본 교회 회칙에 규정된 회장직을 제외한 각 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임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처리하게 한다.

1.회장의 임무 : 회장은 그 회가 부여한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과 회의의 질서를 지키게하고 회의 시 개회와 폐회를 주관한다.

2.회장의 가부결의권 : 회장은 매 안건에 가부를 묻고 결정된 것을 공포한다. 가부가 동수일 때 회장이 투표하지 않았으면 회장에게 결정권이 있고 회장이 투표하였으면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3.회장의 비상정회권 : 회장은 특별한 일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때에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단 1개월 이내에 속회를 해야한다.

제 40 조(서기와 그 임무) 교회의 모든 회의는 서기를 선임하여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모든 서류를 기록하여 지정된 곳에 보관케 한다.

1.서기의 권한 : 서기는 정당한 요구권자가 회의록의 어떤 부분의 사본은 청구하면 회장의 허락으로 교부하여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 한 사본은 그 회의의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

제 41 조 (효력) 각 회에서 결의 통과된 후 당회에 상정된 의안의 효력은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회의 의결통과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 11 장 권징

제 42 조 (치리권)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않고 단체에 있으므로 본 교회의 치리권은 당회에 있으며 집행에 대한 절차와 방법등 제반 규정은 총회헌법 권징조례에 따른다.

제 12 장 재정과 재산관리

제 43 조 (교회 재산의 조성) 본 교회의 재산 조성은 교인의 헌금과 기관 및 개인이 헌납하는 재산과 그 밖의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등으로 한다. 교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교회에 헌금또는 헌납했을 때에 그것은 곧 교회의 재산이 되며, 헌금또는 헌납한 자는 이에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없다

제 44 조 (교회 재산의 보존) 본 교회 소유 부동산은 회칙 제26조 2항에 규정한 법인재단에 편입 보존하되 운영권은 본 교회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45 조 (교회재산의 귀속과 사용) 본 교회 재산에 대한 귀속과 사용권은 다음과 같다.

1.교회 재산은 본 교회와 당회에서 각각 위임받은 재단법인 충현교회 유지재단,재단법인 충현동산 및 사회복지재단 충현복지재단에 속하며 재단 이사회에서 관리하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2.교회 재산의 보존,처분 및 사용에는 당회의 관리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교회의 재산과 예금또는 현금판리는 규정된 방법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3.교회의 재산은 지분권이 없다.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본 교회를 이탈하거나 그의 교리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그 재산의 사용에 참여하지 못한다.

4.위 3항에서의 “규정된 방법” 이라함은 교회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6 조 (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3 장 회칙개정

제 47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의 가결을 받아야 한다.

제 14 장 부 칙

제 1 조 (경과규정) 본 회칙의 제정은 당회의 의결로 효력을 가지며 1998년도 말 정기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어야 한다. 본 회칙 시행일 이전에 각종 규정 또는 의결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하며 이후 시행에 있어서 본 회칙에 위배되는 각종 현행 규정은 1999년 1월 31일 까지 개정되어야 한다.

제 2 조 (기타사항) 본 교회 회칙 및 별도로 정하는 교회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준용하되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 3 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당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89년 11월 9일

개정 / 1991년 1월 31일

개정 / 1992년 10월 28일

개정 / 1998년

감 사 보 고

본 감사위원회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1월 30일
까지 경상부 및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을 감사 규정에 의하
여 감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앞에 보고드립니다.

감사자의 의견

1. '98년도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2. 현금 및 예금의 취급, 보관, 관리 사항에 이상이 없었음
3.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록, 정리, 보관 상태등에 이상이
없었음

1999년 1월 3일

감사위원장 차 신 득 

감 사 보 고

본 감사위원회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1월 30일
까지 경상부 및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을 감사 규정에 의하
여 감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직회 앞에 보고드립니다.

감사자의 의견

1. '98년도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2. 현금 및 예금의 취급, 보관, 관리 사항에 이상이 없었음
3.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록, 정리, 보관 상태등에 이상이
없었음

1998년 12월 27일

감사위원장 차 신 득 

98년도경상부결산
및 99년예산보고

수입지부

십일조헌금 결산: 6,085,548,630
예산: 6,530,000,000

주일헌금 결산: 991,226,444
예산: 1,000,000,000

월정헌금 결산: 113,636,000
예산: 110,000,000

교회학교헌금 결산: 129,992,600
예산: 130,000,000

감사헌금 결산: 499,847,030
예산: 480,000,000

생일감사헌금 결산: 19,989,000
예산: 18,000,000

경조감사헌금 결산: 45,646,000
예산: 48,000,000

신년감사헌금 결산: 81,959,120
예산: 75,000,000

부활절감사헌금 결산: 95,049,440
예산: 85,000,000

맥추절감사헌금 결산: 75,857,110
예산: 70,000,000

추수절감사헌금 결산: 134,557,810
예산: 120,000,000

성탄감사헌금 결산
예산: 90,000,000

선교헌금 결산: 253,057,080
예산: 250,000,000

장학헌금 결산: 40,380,500
예산: 45,000,000

구제헌금 결산: 97,161,200
예산: 90,000,000

특수전도헌금 결산: 97,159,550
예산: 381,470,000

특별헌금 결산: 73,015,160
예산: 15,000,000

지명헌금 결산: 106,657,379
예산: 100,000,000

교육훈련원 결산: 69,858,000
예산: 73,000,000

기도원 결산: 163,390,100
예산: 130,200,000

기타수입 결산: 292,099,835
예산: 220,000,000

유가증권 결산: 12,185,000

가지급금 결산: 35,474,283

예수금 결산: 3,767,860

토지, 건물, 잉여금 결산: 14,373,994

전년도이월금 결산: 147,325,555

수입합계	결산: 9,679,214,680
	예산: 10,060,670,000

지출지부

예배위원회

성 레비	결산:	5,122,100
	예산:	11,000,000

교역자사례비	결산:	210,506,500
	예산:	230,000,000

목회연구비	결산:	26,037,019
	예산	32,520,000

특별예대비	결산:	25,848,800
	예산:	40,000,000

예배운영비	결산:	16,213,450
	예산:	23,280,000

찬양위원회

찬양사 레비	결산:	305,155,000
	예산:	339,000,000

찬양운영비	결산:	155,100,676
	예산:	153,920,000

1,2,3교육위원회

교역자사례비	결산:	220,445,000
	예산:	221,540,000

학교교육비	결산:	475,629,180
	예산:	518,002,520

교육운영비	결산:	6,651,350
	예산:	99,710,400

전도위원회

전도비	결산:	84,773,800
	예산:	129,020,000

문서전도비 결산: 6,076,120
 예산: 31,600,000

군전도비	결산:	144,153,810
	예산:	186,000,000

지원전도비	결산:	96,310,000
	예산:	174,600,000

교정전도비	결산:	62,632,240
	예산:	70,100,000

경찰전도비	결산:	12,500,000
	예산:	30,000,000

실업인전도비 결산: 예산: 140,200,000

특수전도비	결산:	
	예산:	60,000,000

선교위원회

선교비	결산: 137,718,257 예산: 128,520,000
세계선교비	결산: 263,253,081 예산: 620,670,000
선교운영비	결산: 18,529,400 예산: 23,600,000

봉사위원회

구제비	결산: 684,977,320 예산: 817,600,000
경조비	결산: 44,745,350 예산: 65,000,000
봉사비	결산: 18,145,500 예산: 16,400,000

기획위원회

기획비	결산: 6,672,370 예산: 31,800,000
발간비	결산: 12,378,000 예산: 71,020,000
전산비	결산: 5,090,830 예산: 38,000,000
출판비	결산: 161,273,570 예산: 157,172,000

홍보비	결산: 11,060,330 예산: 13,695,000
-----	----------------------------------

인쇄실	결산: 14,231,700 예산: 14,800,000
-----	----------------------------------

상회상납비	결산: 38,000,000 예산: 38,000,000
-------	----------------------------------

교구위원회

교역자사례비	결산: 711,100,000 예산: 780,000,000
--------	------------------------------------

교구활동비	결산: 75,791,260 예산: 135,700,000
-------	-----------------------------------

교구운영비	결산: 4,290,000 예산: 11,565,000
-------	---------------------------------

행정위원회

직원급여	결산: 985,247,000 예산: 1,130,440,000
------	--------------------------------------

차량유지비	결산: 124,026,439 예산: 132,000,000
-------	------------------------------------

통신비	결산: 56,784,196 예산: 63,600,000
-----	----------------------------------

출장교통비	결산: 57,080,962 예산: 80,000,000
-------	----------------------------------

복리후생비	결산: 118,257,447 예산: 136,200,000
-------	------------------------------------

공과금	결산:	98,536,200
	예산:	92,000,000
사무비	결산:	10,220,920
	예산:	10,000,000
소모품비	결산:	19,063,660
	예산:	24,000,000
청소비	결산:	31,887,490
	예산:	40,600,000
포상비	결산:	28,000
	예산:	5,000,000
접대비	결산:	12,628,743
	예산:	18,000,000
퇴직금	결산:	234,598,340
	예산:	100,000,000
회의비	결산:	2,797,190
	예산:	6,000,000
인쇄비	결산:	7,260,000
	예산:	10,000,000
용역수수료	결산:	7,433,320
	예산:	5,000,000
사무집기비	결산:	10,191,340
	예산:	20,000,000
잡비	결산:	26,534,226
	예산:	35,000,000
수도광열비	결산:	333,399,180
	예산:	400,000,000

수선비	결산:	218,182,900
	예산:	282,500,000
시설공사비	결산:	7,821,000
	예산:	76,000,000
조경비	결산:	4,215,000
	예산:	10,000,000
관리운영비	결산:	29,502,780
	예산:	10,000,000
음영실	결산:	68,576,070
	예산:	121,225,000
비품	결산:	18,504,500
	예산:	50,000,000

교육훈련원

한국교회성장연구원	결산:	
	예산:	163,380,000
유아원	결산:	66,182,520
	예산:	81,928,000
성경연구원	예산:	93,064,439
	결산:	68,380,000
선교연구원	결산:	4,005,560
	예산:	18,120,000
도서관	결산:	3,158,610
	예산:	12,700,000
장학비	결산:	117,107,224
	예산:	208,000,000

기도원보조	결산: 288,915,690 예산: 285,335,000
교육연구소	결산: 3,510,997 예산: 82,110,000
임차보증금	결산: 182,000,000
차량운반구	결산: 27,445,000
퇴직전환금	결산: 34,119,570
미지급금	결산: 21,292,300
지명지출	예산: 100,000,000
예비비	예산: 729,117,080
차기이월금	결산: 2,295,223,854
지출합계	결산: 9,679,214,680 예산: 10,060,670,000

특별회계98년결산 및 99년예산보고

수입지부

건축현금	결산: 59,233,700 예산: 50,000,000
수입이자	결산: 333,201,871 예산: 50,000,000
전년도이월금	결산: 4,896,402,244 예산: 2,308,762,555
수입합계	결산: 5,288,837,815 예산: 2,408,762,555

지출지부

교육관건축비	결산: 62,254,890 예산: 1,800,000,000
공원조성공사비	결산: 270,041,910
교회준공공사비	결산: 147,778,460
소석장학출현금	결산: 2,500,000,000
예비비	예산: 608,762,555
차기이월금	결산: 2,308,762,555
지출합계	결산: 5,288,837,815 예산: 2,408,762,555